

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장애인가정  
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5 월 11 일

여 수 시 장 2024.5.11



여수시 조례 제2085호

붙임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085호

##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

「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출산지원금”(이하“지원금”이라 한다.)이란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”를 ““출산 지원금”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(유산, 사산 포함)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정부지침”이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 략)</li> <li>2. “출산지원금”(이하 “지원금”이라 한다.)이란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.</li> </ol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4조(지원액)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의 장애 정도에 따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 다만,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 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삭제</u></li> <li>2. <u>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00만원</li> <li>나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70만원</li> </ul> </li> </ol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“출산 지원금”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(유산, 사산 포함)한 경우 -----</li> <li>3. “정부지침”이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.</li> </ol> <p>제4조(지원액) ①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